

연계고용 표준도급계약서

이 연계고용 표준도급계약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이해를 돋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작한 양식입니다.

이 연계고용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연계고용 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실제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 당사자는 이 연계고용 표준도급계약서를 참고하여 개별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연계고용 표준도급계약서는 연계고용 도급계약서의 작성에 있어 참고용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이 연계고용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만으로 해당 계약이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상의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 회사(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와 ○○○회사(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절 총 칙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법 제33조 및 고시에 따른 연계고용 도급계약으로서, 그 목적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본 계약 체결에 있어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원만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계고용"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이하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라 한다)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하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간에 일의 완성(노무제공을 통한 생산품의 제조·수리·시공 및 용역제공을 의미한다)과 이에 대한 보수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5. "납기"란 개별계약에 명기된 계약물품을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는 기일을 말한다.

제3조(당사자의 지위 등)

- ① 본 계약 쌍방 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지위가 있음을 각 확인하고 본 계약이 연계고용 도급계약임을 확인한다.
 1. 원사업자: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
 2. 수급사업자: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업무의 내용)

- ① 이 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및 도급에 따른 보수지급액은 계약 기간 내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별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연계고용 도급계약의 내용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로 정한다. 이 경우 개별 전마다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물품의 품명, 사양, 수량, 단가, 납품장소, 납품기일, 대금, 대금지급일
 2. 도급업무의 구체적 과업(규격, 물성, 강도, 공정) 및 도급업무수행에 따른 대금(보수)산출 내역과 지급기일
 3.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검사 시기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③ 도급업무 수행 또는 처리순서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문사양서 또는 주문지도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변경)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 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해 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에 의해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6조(부당한 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물품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 입찰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7조(단가의 결정)

- ① 계약물품의 단가는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협의로써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단가는 개별계약에서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는 제조에 공여되는 제반비용과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인도 장소까지의 포장비,

견본

운임(도착도), 보험료 등 일체의 제반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가격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계약물품의 단가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원사업자는 계약물품을 제조위탁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계약물품 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제9조(사양서 등의 지정)

-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양서(규격, 물성, 강도, 공정) 등에 의거 용역을 제공하여 발주품목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원사업자는 사양서에 '본 계약에서 정한 도급사항의 구체적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양서나 기타의 지시에 관하여 불분명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자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양서류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변경에 따른 구형 제품의 처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절 납 품

제10조(발주)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발주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도급위탁품을 제조·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견본

-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가능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11조(공정검사)

- ① 수급사업자는 제작 착수 전에 제작 공정표와 시제품(계약 시 제출키로 협의한 경우)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양산에 착수하고, 원사업자는 제작과정에 입회하여 공정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공정파악 및 품질관리상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납기)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납기를 정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한 납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납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교부한 시점으로 한다.

제13조(납기변경)

- ① 원사업자의 사양변경, 제작보류 등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의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납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납기 전에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는 미리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납기 내에 계약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30일 전에 그 이유 및 납품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알려 원사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④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납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납기를 재조정한다.

제14조(납기 지연배상)

- ① 수급사업자가 제12조의 납기를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불량으로 인한 재제작 등의 기타 이유로 납기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지연 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수급사업자 지불하여야 한다.

견본

- ② 천재지변, 전쟁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는 지연배상을 예외로 한다.
- ③ 원사업자의 사양변경, 제작보류 등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의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그 지연일수 만큼 지연배상에서 제외한다.
- ④ 납기변경이 있었던 경우의 지연배상일수는 변경된 납기를 기준으로 한다.

제15조(납품절차)

- ① 수급사업자는 납품 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검사 성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개별계약에서 정한 입고절차에 따라 납품한다.
-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물품을 납품한 경우 공급자에게 그 계약물품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수령증명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납기의 선행, 지연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 이상납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원사업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상납품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원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물품의 품질)

- ① 계약물품의 품질은 제9조 제1항의 사양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품질보증협정서 및 원사업자의 검사기준에 합치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검사기준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물품을 반품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 ③ 원사업자는 계약물품의 제작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제작기술공법, 자재 및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계약물품의 검사)

- ① 원사업자에게 납품되는 물품의 합격, 불합격 판정은 원사업자의 사양서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검사기준에 따른다. 다만, 원사업자는

견본

-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사업자의 입회하에 납품되는 물품의 검사를 진행한다.
-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합부 판정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단, 설치를 요하는 계약물품의 경우에는 전량 설치완료 후 까지 원사업자는 그 판정을 유보할 수 있다.
- ③ 원사업자는 검사 전에 계약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검사결과 주문수량보다 초과되거나 불합격된 계약물품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자체 없이 이를 인수하고, 불합격된 계약물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지정납기까지 이의 대체물품을 납품하거나,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도 수급사업자는 본래의 납기에 대한 지연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⑤ 원사업자는 불합격된 계약물품이 성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 하에 조건부로 합격시킬 수 있다.
-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검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계약물품은 해당기관의 소정의 검사를 받아 그 검사증을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입회를 필요로 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심사일정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원사업자가 동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검사 또는 시험으로 인하여 변질 또는 소모된 물품 등의 통상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하고 통상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따라 이를 분담한다. 다만 이는 납품수량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 ⑧ 원사업자는 계약물품의 특성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공장(수급사업자의 가공, 제작, 시공 현장 포함)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에도 각 항의 준수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8조(하자보증 책임)

- ① 제17조의 검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납품 완료일부터 1년간

하자보증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수정, 보수 또는 대품 교환 등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원사업자가 판단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 ③ 원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자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 예치방법, 예치기간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계약물품 소유권 이전) 계약물품의 소유권 이전은 제17조의 검사결과 합격 후 원사업자에게 인도된 시점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에게 이전 된다. 다만,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시기가 수급사업자의 계약물품 납품시기보다 늦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계약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제20조(부당반품의 금지)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물품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물품을 반품하는 행위
 2. 원사업자의 품질기준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사급 자재 또는 대여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계약 물품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행위.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자재 또는 대여품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4. 원사업자의 사급 자재 공급지연에 따라 납품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물품을 반품하는 행위

제3절 지 불

제21조(대금청구 및 지급방법)

- ① 수급사업자는 전월 1일에서 전월 말일까지 납품된 내역을 당월 ○일까지 원사업자에게 거래명세서(납품내역서)와 검수확인서(또는 정산내역서)를 제출하고, 원사업자는 동 서류 수령 후 ○일 이내에 이를 확인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거래명세서 확인완료 이후 ○일 이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납품대금을 청구하고, 원사업자는 청구일(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부터 ○○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영업일)이내에 대금을 은행계좌로 입금 또는 카드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 ③ 원사업자는 도급대금을 계약물품 등의 수령일로부터 ○○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0분의 155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물품의 제작 등에 있어 초기에 비용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급금의 사용분야, 선급금 정산 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물품의 제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 지급 시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당 결제청구 등의 금지)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물품 제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계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위탁에 대한 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부당감액의 금지)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위탁할 때 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24조(하도급 금지)

-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한 목적물의 제조·공급 등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 ② 수급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원사업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절 일반사항

제2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계약물품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손해배상 청구)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8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하자로 인한 원사업자의 피해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제조물 책임 등)

-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한 물품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물품에 「제조물 책임법」 상의 결함이 있어 원사업자가 그에 따른 책임(제조물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원사업자는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해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수급사업자의 생산공장 현장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의 적합성 검증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사업 활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원사업자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1.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계약물품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기타 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제29조(영업비밀의 유지)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할 수 없다.
-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원사업자나 최종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수급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지적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 ① 수급사업자는 계약물품에 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적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계약물품의 제작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원사업자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②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적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원사업자와 지적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사업자의 사전 허락 없이 수급사업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의 권리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지적재산권 등의 침해)

- ①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사양에 따라서 계약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그 계약물품 및 계약물품의 제작방법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사양에 따라 계약물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그 제작방법을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작방법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물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 사이에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2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채권, 채무를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전부 및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견본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입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 상대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했을 경우
 6. 그 밖에 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때로서, 이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종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원사업자는 계약물품의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작업에 상당 기간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물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상당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23조부터 제24조, 제26조, 제29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및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34조(거래정지 예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위탁계약 또는 공동개발 품목의 거래를 장기간 정지하거나 또는 현저히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3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 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견본

제35조(통지예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생겼을 때에는 신속히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2. 계약과 관련 있는 영업을 양도 또는 양수할 때
3. 주소, 대표자, 상호, 기타 계약 및 거래상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

제36조(잔존의무)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거나 해제·해지되어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도 이 계약 종료·해제·해지일로부터 ○년간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8조에 정하는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정하는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정하는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제37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제1항과 관련한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해결을 위해 본 계약 외 별도의 중재법상 중재합의를 한 때에는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한다.
-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8조(자료요구 및 제출)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2.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 등록증)
3. 계약기간 동안의 월별 장애인 근로자 명부

견본

제39조(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 인증)

- ①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 인증기준을 향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인증 취소로 인해 원사업자에게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40조(부담금 감면요건)

- ① 제4조 제1항의 월을 특정하여 보수금액을 정한 사항에 대해 원사업자의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부담금 감면 불이익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② 제4조 제3항의 도급업무의 구체적 과업(규격, 물성, 강도, 공정) 및 도급업무 수행에 따른 대금(보수)산출 내역에 관한사항이 누락되어 발생하는 부담금 감면 불이익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41조(기간 등)

-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 ② 이 계약은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된 해제 또는 해지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다.

2000년 월 일

워사업자 회사명 :

주 속 :

대표자 :

(일)

수급사업자 회사명 :

주 속 :

대표자 :

(91)

견본

별지 1

- ◇ 계약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계약금액 : 금 원정(₩)

- 공급가액 : 금 원정(₩)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 ◆ 도급업무의 구체적 과업

품목	규격	물성	강도	공정

- #### ◆ 대금(보수)산출내역

비목		구분	금액	비고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전력비			
	운반비			
	기타항목(예시)			
기타경비				